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7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신성범 · 김예지 · 최수진
서천호 · 김태호 · 서범수
이인선 · 박성훈 · 박덕흠
주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원시설 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제한되고 위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또한 대부료 감면을 받지 못하여 주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전국유림 허가 사유 중 공용 ·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 ----- ----- ----- ----- ----- -----.
1. 국가 또는 <u>지방자치단체</u> 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 <u>지방자치단체(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포함한다)</u> ----- -----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